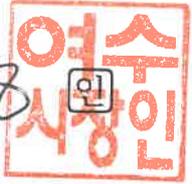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  

여수시 조례 제1994호

붙임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94호

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40세”를 “46세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위탁)”을 “(시설의 위탁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중장년층”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위탁) ① ~ ④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46세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시설의 위탁) ① ~ ④ (현행 과 같음)</p>